

부산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나59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나5998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0가합448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E
2. H
3. I
4. D
5. F
6.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윤인태

피고, 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태

2. C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1. D

2. E

변론 종결 2022. 11. 24.

판결 선고 2022. 12. 2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0가합4481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1) 2) 에게, 1)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 선정자 F, G은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1972. 5. 20. 접수 제6921호 및 2014. 9. 16. 접수 제9588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선정자 H는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16. 11. 24. 접수 제2199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3) 피고 E는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17. 9. 21. 접수 제1508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4) 선정자 I는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17. 10. 23. 접수 제164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5) 피고 C은 1972.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중 각 "원고"를 각 "망 A"로 일괄하여 고쳐 쓰고, 2) 제1심 판결문 4면 아래에서부터 7행의 "원고는 2021. 4. 18. 사망하였다."를 "A는 2021. 4.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E, H, I와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들인 망 K의 처 B과 그 자녀들인 D, F, G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 중 B을 제외한 나머지 위 E 등 6인이 당심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로 고쳐 쓰며, 3) 이 사건 원고들 청구의 전제 사실 즉, '망 A가 피고

C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를 아들인 망 K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 외 6명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준용

판사최희영

판사추경준

별지

1) A는 제1심 소송이 계속중이던 2021. 4. 18. 사망하였으나, 그 소송대리인의 의사 내지 희망에 따라 별도의 소송수계 절차 없이 사망한 A를 원고로 표시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망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각하,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망 A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그 상속인들을 위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후 당심에서 망 A의 상속인 7인 중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6인이 소송대리인(제1심 소송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이다)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위 B은 이 사건의 피고 중 1인으로서 제1심에서부터 망 A의 이 사건 청구를 적극 다투어 왔고, 당심에서도 소송대리인(제1심 소송대리인과 같은 변호사이다)을 선임하여 망 A를 수계한 원고들의 청구를 시종일관 다투면서 원고들 항소의 기각을 구하고 있다.

한편, 소송절차를 수계한 원고들 6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의 청구 및 항소는 망 A의 상속인들 중

위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6인만 유지한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위와 같은 제1심 이래 당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소송경과, 당사자의 청구 및 주장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B은 망 A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그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한 항소중 B 자신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인함과 아울러 이를 철회 내지 취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망 A의 상속인으로서의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2) 망 A의 상속인으로 당심에서 소송을 수계한 원고들 6인 이외에 항소하지 아니한 B도 있으나, 원고들은 그 상속지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청구취지나 항소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